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안 번호	618
----------	-----

제출년월일 : 2001. 5. 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지식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발전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가 필수적인 요소로서
- 정보화 촉진을 위해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제도적인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디지털 정보화 도시를 육성토록 함.

□ 주요골자

- 가.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설정하여 목표 지향적인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
- 나.연도별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수립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
- 다.정보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 라.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위한 지역정보센터 설치 및 민간단체 정보화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
- 마.지역내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임.(안 제7조)
- 바.지역정보화지원본부 설치를 통하여 정보화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4조)
- 사.정보화 업무의 표준화를 통하여 정보화 자료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
- 아.장애인, 노인등의 시민정보화 교육 추진으로 정보화 소외계층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7조)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파주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지역정보화”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를 말한다.

2.“지역정보화지원본부”라 함은 정보화전문요원, 컴퓨터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 일체를 말한다.

3.“주관부서”라 함은 시의 단위업무 담당실·과·소를 말한다.

4.“최고정보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라 함은 기존 업무의 흐름을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시장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간부 공무원을 말한다.

5.“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라 함은 기존 업무의 흐름을 관찰하여 정보화에 적합하도록 업무처리의 절차 등을 혁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 개선
4.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시행
5.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제2장 지역정보화의 촉진

제4조(지역정보화 촉진계획 수립·시행) ①시장은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파주시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3조의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수정 및 보완된 기본계획을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촉진기금조성) 지역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통하여 정보화촉진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기금 운영에 관한 내용은 따로 정한다.

1. 파주시 출연금
2. 정보통신망 이용 징수 수수료 등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제6조(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①시장은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센터는 생활권 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구성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 형태는 지방자치단체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제3섹터 등에 효율적인 방식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정보화 관련 민간단체가 지역정보센터 기능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전산장비의 공동사용 또는 사업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제7조(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지역내의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②지역정보화 촉진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③지역내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④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구성)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내 시의회·유관기관·민간단체·학계·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교사·연구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③ 협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과·소장이 된다.
- ④ 협의회 심의와 관련한 업무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를 지역정보화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제9조에 의한 기관·단체·학계·산업체 장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시장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2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연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지역정보화지원본부

제14조(설치)①시장은 지역정보화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역정보화 본부의 설치는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시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장소에 설치하되, 컴퓨터실은 재난 피해예방 및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실과장이 지역정보화지원본부장이 된다

제15조(기능)지역정보화지원본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과주시 정보화 기본계획의 시행 및 조정
- 2.지역정보화촉진 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
- 3.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 4.정보통신업무와 관련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입 표준화 규정 공시
- 5.지방행정업무 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
- 6.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운영
- 7.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지정한 사업

제16조(시설장비) ①시장은 지역정보화지원본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호의 관련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장비설치에 따른 전산실, 통신실

2. 기타 지역정보화 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 ② 시장은 지역정보화지원본부에 설치하는 전산장비의 최적상태 유지를 위하여 온·습도, 일정전압, 화재대비 등에 필요한 관련시설과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

제17조(원시자료)① 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취합·작성 및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은 주관부서에서 한다

- ② 업무의 주관부서에서 원시자료의 입력서식을 생산·수정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은 지역정보화지원본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전산정보관리)① 업무의 전산화로 구축되거나 구축된 전산정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보관 관리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전산화로 구축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9조(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① 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보안이 요구되는 전산정보자료를 타기관에 제공하고자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정보화지원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는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주관부서장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지역정보화지원본부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산정보자료를 대외에 제공하고자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관부서 및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장 업무 정보화 및 표준화

제20조(업무정보화)① 시장은 정보화 사회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정보화 업무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과 정보화사업의 조정등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최고정보화책임관(CIO)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 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전자화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이 지역정보화 지원본부에 정보화를 의뢰할 경우에는 정보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전산인력과 시스템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업무표준화)① 시장은 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업무를 정보화 할 경우에는 업무의 타당성 조사, 업무처리 절차의 재구성(BPR), 시스템분석 및 표준화기법 등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문서화 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 업무의 호환성을 유지하고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지역정보화지원본부장은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표준화 규정을 제정하여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도입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 기준
2. 전산장비 도입 규격기준
3. 사무표준 소프트웨어 사용 기준
4. 부서별 전산장비 보유 기준
5. 네트워크 구성 기준
6. 부서별 서버설치 기준
7. 기타 호환성 유지 및 공동활용을 위한 내용

제22조(정보화 용역)① 시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에 의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하고자 하는 업무가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정보화 되어 있는 경우 공동활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를 용역하는 경우에는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보화용역작업단을 편성하여 용역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23조(저작권 등록) 시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제7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제24조(정보보호) 시장은 업무의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2. 처리정보의 열람·정정 등
3.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감독체계의 제도화
4.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5. 기타 효율적인 정보보호대책 추진

제25조(보안관리)①시장은 지역정보화지원본부의 전산실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역정보화지원본부에 근무하는 자에게 보안업무규칙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주요자료의 보안대책)① 시장은 지역정보화지원본부 및 업무 주관부서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의 자료에 대하여는 별도로 복사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역정보화지원본부장은 필요시 주관부서의 전산시스템 자료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27조(보험) 시장은 파주시 지역정보화지원본부에 설치된 고가의 전산 통신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장 정보화교육 및 인력육성

제28조(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 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공무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4. 전산업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6. 기타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공무원의 정보화교육) 시장은 일반 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활용능력제고를 위한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활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지역주민정보화 교육)① 시장은 지역주민이나 기업체 종사원의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정보화교육을 자원봉사자 강사를 운영하는

등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화교육 추진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 교육시 협약 기관 및 개인에게 소요되는 강사 운영 및 시설 이용에 따른 최소 경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교육시설·장비 확보)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등 관련 시설·장비와 우수 교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2조(정보통신전문인력 양성등)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 통신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1. 민·산·학·연 등과 협력체제를 통한 정보통신전문인력 양성방안
2. 정보통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3. 정보통신 전공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특채
4. 정보통신전문가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수립한 파주시정보화기본계획 및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소		총 무 과
입 안 자	총 무 과 장	홍 덕 기 ☎ 940-4100
	지역정보화 담당	이 기 상 ☎ 940-4138
	담 당 자	유 경 숙 ☎ 940-4132